
- 2026년 안양시 종합감사 -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26. 5.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 사 1 과)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3
① 감사결과 총괄	3
② 종합의견	3
③ 주요 지적사항	4
④ 향후계획	7
IV.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8
① 본처분	8
② 현지처분	8
V. 감사만족도 조사	9

1. 감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90조 등에 따라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안양시를 「2026년 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 감사 시행 ※ 안양시 지난 감사: 2019. 6. 11. ~ 6. 26.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과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민의 권익을 보호

2.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 감사대상: 안양시 (소속기관 포함)
- 감사범위: 2019. 5. 1. 이후 업무 전반 (위임사무 자료요구 2022. 7. 1. 이후)
- 중점사항
 -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 최우선 해결
 - 민생안정을 위한 안전, 인·허가,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
 - 예산, 계약, 보조금 등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

3. 감사실시 과정

- 사전준비: 자료수집(2026. 1. 19. ~ 1. 28.), 착안회의 실시(2026. 1. 26.)
- 감사기간: 2026. 2. 23. ~ 3. 5.(8일간) ※ 사전조사: 1. 29. ~ 2. 10.(9일간)
- 감 사 반: 감사단장 등 4개팀 21명 ※ 도민감사관 별도: 15명

4. 감사결과 처리

- 마 감 회 의: 2026. 3. 5. ※ 안양시 부시장 등 참석
- 감사위원회(심의·의결): 2026. 4. 27. / 5. 11. / 5. 18.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수도권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공업도시로 성장한 역사 위에 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균형 있게 발달한 복합도시임
-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2025. 12. 31. 기준)

인 구	면 적	행정구역 수
563,279명 (도내 4.1%, 10위)	58.5km ² (도내 0.57%, 28위)	2구 / 31동 577통 / 3,189반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1실 6국 3관 1단 3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2구 31동 1의회
- 인 력: 정원 2,040명
 - * 본청 837, 직속기관 80, 사업소 228, 구·동 853, 의회 42

3. 재정규모

- 예산규모 (2025년 본예산 기준)

(단위: 억 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7,594	15,446	2,148	35.8%	51.3%

4. 주요사업 현황

-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2023~2030년, 사업면적 15만m²)
-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019~2033년, 사업면적 328만m²)
- 시 청사 부지 신성장 산업 유치 (2023~2030년, 사업면적 6만m²)
- 안양교도소부지 복합 문화 녹색도시 조성사업 (2022~2030년, 사업면적 32만m²)
- 4개 철도노선(신안산선,동인선,월판선,GTX-C노선) 준공사업 (2019~2028년)

1. 감사결과 총괄

○ 2026년 안양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현황

행 정 상 (건)						신 분 상 (명)				재 정 상 (백만원)			
구분	계	기관 경고	시정	주의	통보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계	추징	회수	환급
본처분	52	2	15	36	13	39	-	5	34	364	364	-	-
현지처분	1	-	-	1	-	-	-	-	-	-	-	-	-

※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주의·통보 동시처분 등)

2. 종합의견

○ 이번 안양시 종합감사는 2019년 5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도민 감사관 의견을 적극 활용하는 현장 밀착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양시가 꾸준히 실시해 온 자정 노력에 따라 총 지적건수는 직전 감사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기관경고·징계 처분건수는 증가

※ (총 건수) 92건 → 53건 / (기관경고) 없음 → 2건 / (징계) 2명(2건) → 5명(4건)

○ 아울러, 현장면책심의회(2026. 3. 5.)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을 한 2명(1건)을 면책 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9건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함

○ 다만, 안양시의 행정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번 감사를 통해 이를 진단하고 법령에 근거한 시정방향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의 마련을 요구함

○ 특히, 공유재산 관리 소홀, 계약 발주 부당처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공무원 보직 관리 부적정, 마약류 업무 부당 처리, 기계식주차장 관리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 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

3. 주요 지적사항

1 수의 사용허가 부적정 및 심의회 미이행 등 공유재산 관리 소홀

- 가과 등 4개 부서는 사용허가 대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수의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데 ○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했고, 나과 등 5개 부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회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함

조치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 및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방안 마련 (기관경고 · 통보)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발주 업무 부당 처리

- 가과, 나과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ㄱ 제작 설치” 물품 제조계약을 ’20년 ○월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발주하였고, 전기공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어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받게 함

조치 사항



- 물품 · 용역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등 철저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징계 ○명, 훈계 ○명)

3 세입 · 세출외 현금 직접 사용 부적정

- 가과는 “ㄱ 사업” 추진에 따라 어린이공원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공원 확보비 1,936,818천원을 현금(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납부받은 후 세입 · 세출 조치 없이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20 ~ ’20년까지 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회에 걸쳐 1,927,547천원을 직접 사용*함

* 대체공원조성비 납부액 1,936,818천원 / 사용액 1,927,547천원 / 잔액 9,271천원

- 나과는 가과로부터 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지출 요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대체공원 확보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출을 실시함

조치
사항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수립 절차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기관경고 및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남은 금액을 세입조치 (기관경고·시정)

4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예외 인원 비율 미준수

- 가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미도과 인원에 대한 전보 비율이 연간 10% 이내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20〇〇년 54.1%, 20〇〇년 52.2%, 20〇〇년 47.4%, 20〇〇년 38.9%로 과도하게 전보인사를 하였음

조치
사항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등 철저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〇명)

5 몰수 마약류(수사기관 압수품) 부당 처리

- 가구 나과는 범죄에 연루된 몰수마약류 〇종 〇정을 인수하면서 검사의 사건종결 통보를 받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지 않고 수사기관의 인계 공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 〇종 〇정의 인계를 거부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며, 검사의 폐기 지휘없이 임의로 폐기함
- 또한 폐기한 사진을 정확한 증빙으로 남겨놓지 않아 임의로 폐기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마약류를 자체 폐기하였다는 내용 없이 검찰 지청에서 폐기 의뢰받은 마약류만 폐기결과를 검찰에 통보함으로써 〇종 〇정의 폐기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조치
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등 철저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징계 〇명, 훈계 〇명)

6 기계식주차장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행정처분 소홀

- 가과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실시,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관리인 선임 또는 변경 통보 미이행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 ○개소에 대해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총 약 000,000천 원의 과태료 미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미이행함

조치 사항



- 「주차장법」 위반한 ○건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시정)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7 ㄱ 연간단가 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등

- 가과는 2000년부터 ㄱ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아닌 지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작업을 지시하고 지역업체 직원이 관급자재를 자유로이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의 하도급 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조치 사항



- 앞으로 연간단가 공사의 하도급 관리, 공사감독 업무 철저 및 불법 하도급 혐의가 있는 계약상대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방안 마련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징계 ○명, 훈계 ○명)

8 용역 과업 미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부당 처리

- 가과는 ㄱ 수립 용역, ㄴ 용역, ㄷ 수립 용역 추진시 과업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준공조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준공금을 지급한 이후 잔여 과업을 추진함

조치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등 철저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징계 ○명, 훈계 ○명)

4. 향후계획

○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같음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간 운영 및 결과 통보

〈 감사결과 조치 〉

▷ 행정·재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 조치 후 보고

- 징계대상자 → 관할 인사위원회에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
- 훈계대상자 → 처분 후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재심의 신청 → 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감사기관은 2개월 이내 처리)

※ 근 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재심의결과) 인용 1건

- 감사정보시스템 자료입력 및 종합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시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 우수공무원은 2026년 하반기 감사유공 표창대상자로 추천

IV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본처분

- 행정상 조치: 52건 (기관경고 2, 시정 15, 주의 36, 통보 13)
- 신분상 조치: 39명 (경징계 5, 훈계 34)
- 재정상 조치: 364,357천 원 (추징)

“표 생략”

2. 현지처분

- 행정상 조치: 주의 1건
-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표 생략”

1. 조사 개요

- 기 간: 2026. 2. 23. ~ 3. 5. (7일간)
- 대 상: 감사장 방문 수감공무원 전체(총 76명 참여)
- 내 용: 감사자의 자세 및 전문성, 업무추진 도움 정도 등

2. 만족도 조사결과

- (총평)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 감사관의 친절도, 의견청취 노력도, 자료요구 적정성 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총 76명 참여

설문내용	“긍정”	“보통”	“부정”
감사관 친절도	89.5%	9.2%	1.3%
의견청취 노력도	86.8%	6.6%	6.6%
감사관 전문성	82.9%	13.2%	3.9%
업무추진 도움여부	79.0%	19.7%	1.3%
자료요구 적정성	84.3%	11.8%	3.9%
지적사항 수용여부	80.3%	15.8%	3.9%
면책제도 인지여부	43.4%	48.7%	7.9%

3. 조치사항

-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단에 공유하여 향후 현지감사 대응 개선자료로 활용